

제 정 : 2024. 5. 21

2024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SAMSUNG SDS CP(Compliance Program)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I 개요

### 1. 하도급거래의 기본개념

-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하도급법은 그 명칭과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1다27470 판결)

### 2. 원사업자와 수급업자의 의미

- '원사업자'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자 중 수급업자보다 연간매출액 등이 더 많고,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연간매출액 이하가 아닌 기업을 의미합니다.
-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서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를 의미합니다.
  -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3. 하도급법상 위탁의 유형

구 분	내 용
제 조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 품질, 성능, 형상, 디자인, 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 포함)를 의뢰하는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 소비용의 단순한 일반사무용품의 구매</li> <li>•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등을 단순히 제조위탁하는 경우</li> <li>• 위탁 받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지 않고 단순구매하여 납품하는 경우</li> </ul>

구 분	내 용
수 리	<p>-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물품을 수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그 수리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p>
건 설	<p>-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 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 전기공사법법에 따른 공사사업자(경미한 공사 포함)</li> <li>• 정보통신공사법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사업자, 소방시설공사법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한 자</li> </ul>
용 역	<p>- 지식·정보성과물 작성 위탁'은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자신이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성과물 작성 행위의 전부/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p> <p>-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소프트웨어, 자사의 홈페이지 등)의 작성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p> <p>-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p>

## II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 1. 서면발급 및 서류 보존의 의무 (하도급법 제3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 서면 기재 사항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
  -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 시기 및 장소
  -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하도급대금(선금금, 기성금 및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2. 하도급대금 지급의 의무 (하도급법 제6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일자 이전(납품 후 60일 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후 15일)에 하도급대금 등의 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일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의무 (하도급법 제9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 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게 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4. 기타 의무사항

- 내국신용장 개설(하도급법 제7조)
- 건설공사 대금지급 보증(하도급법 제13조의2)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하도급법 제16조)
-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하도급법 제16조의2)

### III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 1.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 원사업자는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 또는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방법인지 여부는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성실히 제공하고 충분히 협의하였는지 여부,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옳바르지 못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거래상 지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 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2.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부당한 위탁취소 여부는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것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취소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및 취소한 위탁계약의 범위, 계약이행 상황, 위탁취소의 방법·절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상당기간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자발적인 공사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납기 내 공사 완공 가능성이 없어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다른 사업자의 신형모델 출시로 해당 목적물이 부속되는 제품의 판매부진이 현실화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해지)하는 행위

## 3. 부당한 반품의 금지

- '부당한 반품 금지'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을 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그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반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0조 제2항)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등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등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 등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는 행위

#### 4. 하도급대금 감액의 금지

-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때에만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감액의 정당한 사유는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협의와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다음 각 항목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 감액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고객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 5. 부당한 특약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하도급법 제10조의4)

<p><b>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약정의 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가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li> <li>-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li> <li>-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li> <li>-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 인허가, 환경/ 품질 관리 비용, 원사업자의 설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법령 및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등</li> </ul>
--	---

### 6.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의 금지

- 기술자료 개념
  -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것으로서 제조·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p><b>기술자료 예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 작업공정도, 작업표준서, 기계 조작 방법, 시방서,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방법,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설계도, 회로도 등</li> </ul>
---------------------------	---

- '비밀로 관리된다' 함은 객관적으로 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 표시 여부, ② 접근 대상이나 방법 제한 여부, ③ 비밀유지 준수 의무 부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원사업자는 자신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정당한 사유'란, 제조 등의 위탁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면서 특허 출원을 위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및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

- 기술자료 요구시에는 요구 목적에 따른 제공 범위, 기술 제공 대가, 기술의 권리 귀속 관계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7조의 3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성 여부의 판단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그 내용,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7. 기타 금지사항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하도급법 제1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2)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하도급법 제17조)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하도급법 제18조)
- 보복조치의 금지(하도급법 제19조)
- 탈법행위의 금지(하도급법 제20조)

#### IV 법 위반 시 제재 사항

##### 1. 형사적 제재

-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 위반(하도급법 제30조 제1항)
  - 하도급대금 2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복조치금지 위반(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3억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 미이행, 부당 경영 간섭, 탈법 행위(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하도급법 제31조)
  -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 하도급법 위반이 3회 이상이고 중대성이 일정 기준 (벌점 4점)을 초과할 경우,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2. 행정적 제재

### □ 과징금 부과

–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 과태료 부과

–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 조사 거부 및 방해가 있을 경우 2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시정조치

–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명령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민사적 구제

### □ 징벌적 손해배상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V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임직원 행동지침

### 1. 협력사와의 계약체결

#### □ 하도급법 적용여부에 대한 유의사항

- 고객이 당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당사는 대기업으로 고객사와 당사간 거래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협력업체가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면 하도급법 적용됩니다.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
- 당사가 자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자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자회사와 당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에 따라 부당지원 이슈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단순 제품, SW 라이선스 구매 등 단순 물품구매의 경우
  - 하도급법 상 업무위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설치/ 시운전 조건이 있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협력업체에 업무를 맡기려고 할 때 유의사항

-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협력업체와 적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급 계약을 체결 한 후,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협력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표준계약서 이외의 경우, 반드시 법무검토를 받은 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고객과 당사간 계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인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
  - 고객사와의 계약과는 무관하게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므로 협력업체와 적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 계약 체결 후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고객이 협력업체 인력을 선 투입한 상황에서 당사에 소급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 고객은 현재 하도급법을 위반한 상태이며 이를 소급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면 당사도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 고객이 긴급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 고객이 긴급으로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 당사 정규직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님에 따라 업무지원을 할 수 있으나, 협력업체의 업무지원이 필요하다면 계약체결 후 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고객의 긴급 요청으로 수주계약 전 협력업체 인력 활용이 필요한 경우

- 수주계약 전 선투입 재원을 확보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제안작업 시 협력업체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제안작업 시 협력업체의 업무지원이 필요한 경우

-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 한 후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제안작업 시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 사전 영업단계에서 재원을 확보한 후 도급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 무상으로 제안작업을 지원받고, 사업 수주 후 협력업체 인건비 등을 정산하는 방법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 프로젝트 수주를 실패할 경우 대금 미지급 Risk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2. 협력사 자료 요청

□ 기술자료의 범위

–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자료를 의미합니다.

– 기술자료에는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 및 자료이거나 특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또는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또는 자료가 해당합니다.

- 회사 홈페이지에 홍보 목적으로 게시되어 있는 자료나, 제3자 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팸플릿, 카달로그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기술자료 요청 절차

– 공정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는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자료
-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시 원재료의 원가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의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 기술자료 제공요구 절차
  - 기술자료는 반드시 요청 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시해야 하며, 수령 전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기술자료 활용가이드

-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
  -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 생산토록 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자체 개발 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 실용신안권 등을 공동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기술자료 활용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경영정보 요구 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의 정보
  -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원가에 관한 정보 (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관련 정보 (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내역이 기재된 회계관련 정보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제품 개발 · 생산 계획, 판매계획, 신규투자계획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관련 정보 (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 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추가 가격 협의

- 우선협상대상자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적인 가격협의를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설계변경, 물량축소, 업체귀책으로 인한 수량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유의사항
  - 경쟁입찰로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업체에게 거래조건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거짓 견적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견적을 이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협력업체를 차별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 하도급업체와 변경계약

- 프로젝트 수행 중 변경계약이 가능한 경우
  - 전체 개발업무 공정이 지연되어 하도급 업체 개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 증액 변경계약이 필요합니다.
  - (제3의) 타 업체의 업무개발이 지연되어 하도급 업체 개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 증액 변경계약이 필요합니다.
  - 과업 중 일부 업무에서 공정지연이 발생한 경우 → 감액 변경계약이 가능합니다.
- 하도급 계약 변경절차 준수
  - 업무범위 변경이 있는지 먼저 확인
  - 업무위탁내역서에 업무범위 변경 내역 반영
  - 하도급 업체와 변경계약 체결 요청



□ 감액계약 시 유의사항

– 감액계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 고객의 설계 변경 등으로 업무 범위가 축소 변경된 경우
- 프로젝트를 수행 중 협력업체의 명백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하도급업체의 인력 철수로 인한 감액 등은 불가합니다.

※ 하도급 업체의 귀책 또는 고객의 업무범위 축소 등 감액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도 반드시 하도급 업체에게 감액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합니다.

– 감액변경계약 절차 준수

- 감액 변경 계약의 사유를 먼저 확인
- 업체 귀책으로 인한 감액 변경 계약인 경우 근거자료 확보
- 하도급 업체에 감액서면 교부
- 업무위탁내역서에 업무범위 변경내역 반영
- 하도급 업체와 감액 변경 계약 체결 요청

□ 하도급업체와 계약해지

– 하도급 업체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하도급 업체의 부도나 파산선고 등 중대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 하도급 업체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

– 하도급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를 진행하는 경우

-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확히 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반드시 사전에 하도급 업체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 4. 검수 및 대금지급

□ 하도급업체의 검수요청

– 하도급 업체에서 검수를 요청 하였으나, 일의 완성이 미흡한 경우 검수요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검수요청을 반려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업체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하도급 업체의 검수 요청에 대해 10일내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준수

–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

- 하도급 업체가 일을 완성하면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면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 하도급 업체가 계약한 업무를 완성한 상황에서

- 고객에게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 업체의 검수 요청을 반력하거나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VI 하도급거래 관련 Do & Don'ts

다음의 내용은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권장 또는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정리한 것으로,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진행할 경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Do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추가·변경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위탁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또는 용역위탁한 경우에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개설하여 주어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건설위탁의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완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의 신청을 수령한 경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Don't

-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 목적물등에 대한 품질의 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유가 없으면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 전에 해당 물품 및 장비의 대가를 지급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당사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당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됩니다.
-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안 됩니다.
-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중앙회가 당사의 법 위반을 신고하거나,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신청 또는 협조를 하거나,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Ⅶ 질의응답

[질문 1]

하도급 업체에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일부 업무를 당사가 지정한 특정업체에게 발주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

하도급의 목적달성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업체의 업체선정권 등 독립적인 경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경영 간섭 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질문 2]

고객과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고객실무자가 예산 미 확보 등의 사유로 계약 전 업무를 시작할 것을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2]

업체와 계약없이 업무를 개시할 경우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및 서류 보존의무'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고객과 당사간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고객으로부터 업무요청 공문을 하도급업체 업무개시 전 수령 하여 이를 근거로 당사의 실행예산을 사전에 편성하여야 하며, 하도급 업체와의 계약한 후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질문 3]

납품단가 결정시 기존 하도급업체 외에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이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가장 낮은 가격을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나요?

[답변 3]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중 가장 낮은 견적(서) 가격을 보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부당한 대금 결정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업체로부터 수령한 견적서는 업체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 동의없이 활용 (타 업체 견적가격 제시 등)하는 것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문 4]

업무 수행 중 고객 사정으로 계약금액의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업체의 계약금액도 감액할 수 있나요?

[답변 4]

하도급법 '감액의 금지'에 따라 업무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감액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업무범위 축소, 업체의 귀책 사유 등 정당한 사유에 따라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해당 조건을 하도급계약에 명시하고 감액전에 감액 사유, 감액 기준 등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고객사로부터 검수를 받고 수금을 완료한 상황으로 하도급 업체에 검수 완료하고 업무수행이 일부 미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대금지급 보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5]

고객 수금일로부터 15일, 검수완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 먼저 도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금지급 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법정지급 기한 경과시 년 15.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업무수행이 미진한 부분은 계약상의 하자보수 이행증권 등을 통해 이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질문 6]

고객으로부터 검수받았으며 당사도 하도급업체에 검수하였으나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차원에서 손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6]

검수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당사는 고객으로부터 대금 수금여부와 관계없이 목적물 인수(검수 완료)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법정지급기한이 경과 시 년 15.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기]**

현재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중에 수급사업자의 재정문제로 소속 직원의 퇴사가 이어지는 등 해당 수급사업자 담당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도급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기]**

수급사업자의 재정문제로 향후 계약 이행 가능성이 불안정해 보인다고 하여, 해당 하도급계약 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 취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Ⅷ 위반 사례

### 1. 공정위, 현대오토에버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제재 ('23. 6월)

#### □ 개요

- '23.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오토에버가 공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 법 위반 내용

-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게 공급하는 \*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공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였습니다.
  - \* 각 공장에서 생산 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하여 공정 과정, 차종, 판매 국가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 받는 시스템
- 공정위는 공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상대적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원사업자가 계약상 목적물이 아닌 자료를 공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에 해당하여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한 것 입니다.
- 특히, 이 사건은 시스템개발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 위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 시사점

- 시스템 개발(SI) 분야에서의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로, 특히 협력사 제품 구입을 통한 PJT 진행 중에 제품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협력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자료인지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협력사가 비밀로 관리하는 자료를 요구할 경우, 당사 기술자료 요청 시스템을 통한 기술자료 요구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합니다.



## 2. 공정위,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2. 7월)

### □ 개요

- '22.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관련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 □ 법 위반 사항

- 대우건설이 '18. 7월부터 '20.12월까지의 기간 중 30개 수급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 판단 내용

-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총193건의 하도급 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와 관련하여 자체 발주공사의 경우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 시사점

- 공정위는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도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향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 3. 현대산업개발(주)의 서면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 개요

- '21.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하도급대금기한 위반하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30백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법 위반 행위

- HDC현대산업개발은 '16. 1월부터 '19. 3월까지 기간 중
  - 53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착공한 후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하여 발급하고,
  - 81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시사점

- 선투입 방식의 거래관행은 공정위의 주요 감시대상이므로, 반드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이후 위탁업무를 시작하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4. 한국엔지니어링웍스(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개요

- '23.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으로 낙찰가보다 낮은 대금을 결정한 것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 4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법 위반 내용

-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에 속하는 회사이며 기계설비 제조·판매 업체로서, '18년부터 '21년까지 25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829건의 거래에 걸쳐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을 결정하였으며, 총 인하금액은 16억 8천만원에 달하였습니다.
- 공정위는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 시사점

- 이번 조치는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행위에 대해 제제한 사례입니다.
-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결정한 뒤 추가적인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엔에스철강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개요

- '23.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약 2천만원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하였습니다.

□ 법 위반 내용

- '19.10월, 엔에스철강산업(주)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 제조'를 위탁한 후, '20. 1월부터 '20.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20. 8월, 엔에스철강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연이자 408,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1,409,475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시사점

-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제재사례이므로, 하도급거래 진행 중에 불공정 행위에 따른 협력사에게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IX 체크리스트

항 목	확인결과
협력사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협력사의 인력, 장비 등을 투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고객으로 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협력사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셨습니까?	
협력사에게 산출물을 수령하고 그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협력사의 산출물에 대하여 수령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한 사례가 있습니까?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증액된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셨습니까?	
원재료 가격의 변동 등의 사유로 협력사가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을 초과하여 협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ITO 운영 등 계속적 거래의 계약에서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협력사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협력사에게 제조, 용역 등을 위탁한 후 협력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납품 등에 대한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협력사에게 제조, 용역 등을 위탁한 후 협력사에게 귀책사유 없이 산출물 등을 반품한 사례가 있습니까?	
협력사에게 정당한 감액사유 없이 감액을 하거나 감액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항 목	확인결과
하도급 거래량을 조정하는 방법 등을 이용해 협력사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사례가 있습니까?	
협력사에게 당사의 하도급법 위반사항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등 보복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협력사와의 하도급거래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 SAMSUNG SDS | 20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25(신천동)

<http://www.samsungsds.com>